



2023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목차

I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5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9
	3. 특수학교(급) 다양화	13
	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5
II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21
	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4
	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26
	4. 장애학생 인권 강화	28
III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35
	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8
	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40
	4. 순회교육 지원 강화	42
	5.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44
	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46
	7.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52
	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55
	9. 장애학생 안전 강화	60
	10.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62
IV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제 강화	67
	2.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69
V	2023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75
	2. 기타 행정 사항	76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주요 과제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목표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격차 완화

추진 전략

주요 과제

1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1-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2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2-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2-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3-1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3-2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 3-3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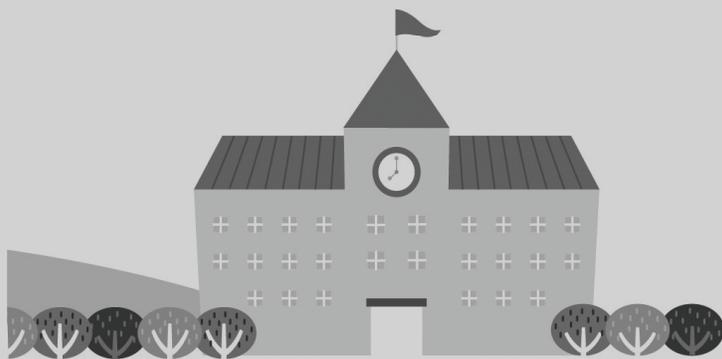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4-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강화
- 4-2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I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추진목적

-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조기발견·지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 강화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 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14일~71개월)부터 장애 진단·등록단계까지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교육부·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참고)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

▲ 표준모자보건수첩에 안내 ▲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마다 안내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에게 안내 ▲ 발달재활서비스 안내와 연계 ▲ 장애 진단 및 등록 시 정보전달 ▲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속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적극 홍보

- 장애(위험) 자녀 양육 정보제공 확대 및 부모 양육 자료 개발·보급
 - 보호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On누리 및 지역(시도) 학부모지원센터'를 '온맘'과 연계*(23.~)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www.nise.go.kr / onmam) 활용
 ※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망 구축, 탑재자료 공유 등 연계 확대

- 보호자의 동의하에 지역 내 병원, 보건소, 기타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장애 의심 및 장애영유아 실태 파악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보육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 단계적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추진**
 - 2023 장애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실태 파악**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증설**
 - ※ 학기 중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 특수교육대상영아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 가능(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0.8.7.)
 -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대상 순회교육 제공**
 -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으로 영아의 가족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 교육(지원)청 단위로 해당 지역의 '육아정보센터'와 협조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소속 직원 연수 희망 조사 및 실시(연 1회 이상, 상반기 내 연수 추진)
-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www.eduable.net) 탑재 및 자료 공유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학급 학생 정원 감축 조정*,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 추가 배치 등 지원 확대**
 -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유치원 일반학급의 정원 내 편성(국가인권위원회, 2017)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 유치원 확대
 - ※ 유치원 특수학급: ('22) 1,437 → ('23) 1,517개 학급 / 통합유치원: ('22) 8 → ('23) 10개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 우선 배치기간 이후 특수교육대상(예정)유아의 추가 배치 수요 발생 시 정원과 관계 없이 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안내

-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 어려움 해소를 통해 초등학교를 적령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
 -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면제는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취학 의무 유예 후에는 재취학 시까지 특수교육 지원 보류
 - 부모상담, 일반교사-특수교사-학부모 간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련 정보공유, 초등학교 방문 등 초등학교 입학 전 및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

▶ **입학 전** 적응지원 프로그램

- 입학 예정 장애유아 부모 대상 **입학 전 사전상담,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
- **입학 전 초등학교 사전 방문 계획 수립·추진**

※ 장애유아 대상 초등학교 체험 프로그램, 부모 대상 교사 상담 및 선배 부모 간담회 등 운영

▶ **입학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

- 교육과정 내 초등학교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

[참고자료] ①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길라잡이(경남교육청, 2017)

②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활동지원 자료(국립특수교육원, 2022)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 등록·관리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의무교육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학생 정보관리 공유 등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리 철저 및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 홍보
- ②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조기발견 및 중재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특수교육교원, 통합교육 담당교원,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소속 직원 연수 실시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확대
 - 장애영유아 부모를 위한 양육 정보 제공 및 교육자료 제작
 - ※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는 학부모온누리 누리집(www.parents.go.kr),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www.nise.go.kr/onmam)에 공유
- ③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특수학교 유치원의 나이스 사용 의무화 안내
 -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및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 입학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24. 1.)
- ④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특수교육 만족도 조사('23. 11.)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추진목적

- ▶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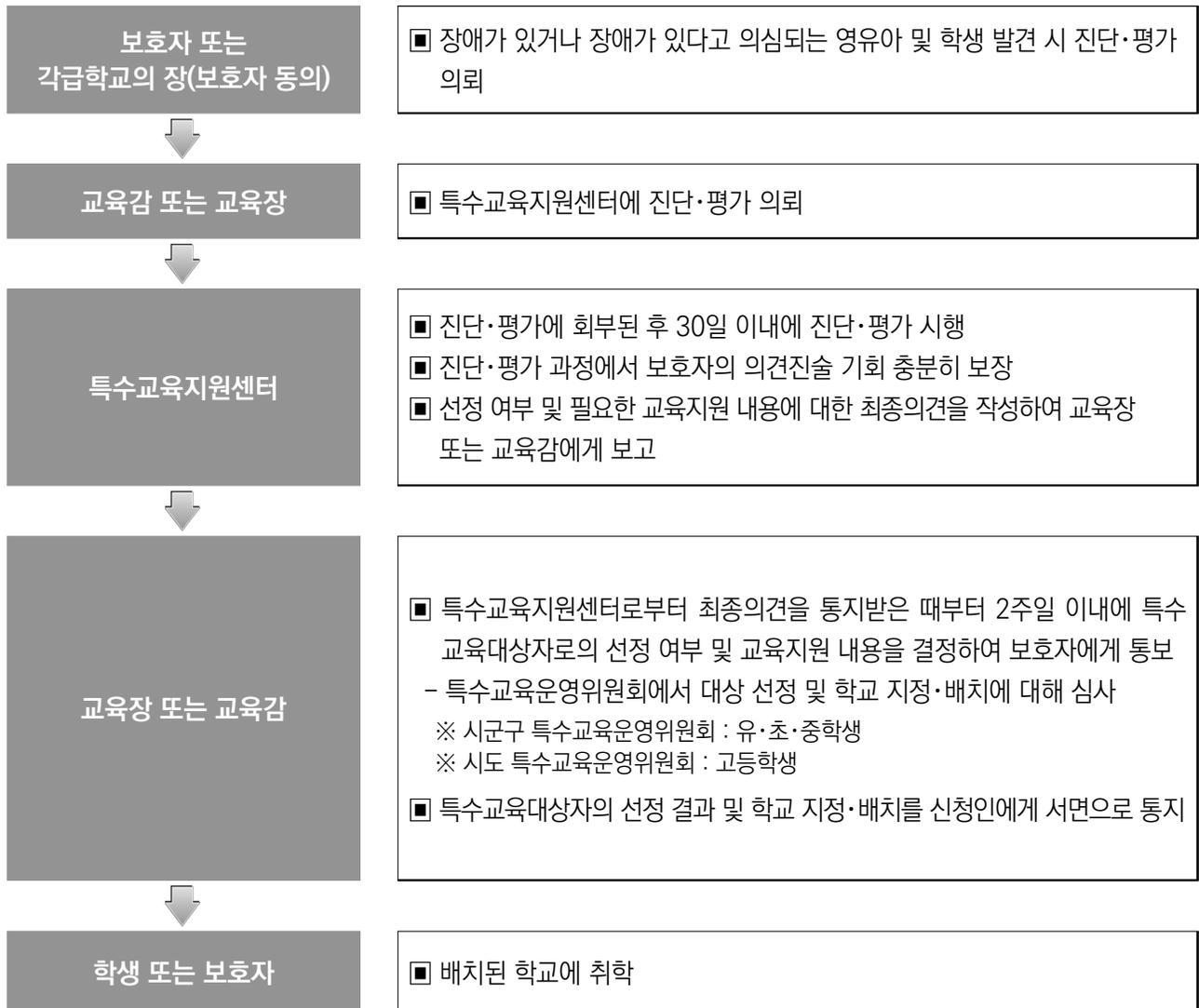
-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의뢰 전후**(희망 또는 필요시) **상담 제공**
 - 선정·배치 절차, 관내 특수교육기관 정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가족지원 등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등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보호자 상담 및 면담·관찰** 등을 통해 **진단·평가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진단 실시**
- **진단·평가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분석 등 **연수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http://www.nise-test.com>) 기초학습능력검사, 적응행동검사, 정서행동검사 등

2) 선정·배치 절차 준수

- 법령에 규정한 재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실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3)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교육 이력 등에 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를 위한 시도협의체 구성·운영
 - * 특수교육지원센터-학교 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관련 항목 정보시스템 연계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의견 수렴, 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사항 요구 분석 등을 통해 정보관리 개선방안 강구

4)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연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관계기관 및 산업체 등
 - 교육지원청 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 업무지원 센터(Wee 센터 등)와 협업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 상시 지원체계 마련
 - * 행동중재, 인권, 상담, 가족지원, 재활, 수어, 점자, 보조공학기기, 보건·의료 등
- 학교 내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등 전담인력(가칭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시범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체 구성·운영
- 관계부처(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학생 가족지원 서비스 및 정보제공 연계 기반 마련
 - * 교육부-보건복지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 및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등
 - 협의회 운영 및 주기적 정보 공유·연계를 통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5)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교육 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전담인력 확충
 - 지역사회 기반 체계적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설비 확충 및 특수교육 전공 전담 장학사* 등 배치 확대
 - * ('22) 198개 센터 내 66명(33.3%)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역할 분담·분산 등 기능 구조화 또는 시도 특수교육원* 설치·확대
 - * ('22) 대구, 대전, 충북, 경남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 업무 관련 필수 영역(진단평가 검사도구 이해와 결과 해석 및 교육적 활용, 보조공학기기, 행동 중재, 교육과정, 장애 영유아 등) 연수 이수, 외부 전문가 연계 교육 지원 등
- ** 승진가산점 부여, 전보 우대, 연수지원 등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유연근무제 인정,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 등

○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수요자 중심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특성화하고 전문적 교육 지원 강화

- * ('22)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48개, 거점행동중재지원센터 5개
- 장애 정도와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평가팀* 구성·운영, 학습 자료 제공 및 수업 활동 지원 강화
-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의료 및 보조공학 분야 전문가, 담당 교원,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심리상담사 등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내실화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전문성 강화
 -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적합배치 가이드북」(경남교육청, 2017) 활용
 - 진단·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외에 보호자, 담임교사로부터 과도한 구비서류 요구 금지
- ② 시도교육청별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수요, 역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과 인력 배치 기준 마련
- ③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확보 노력
 - * 전문상담사, 행동지원전문가, 청능훈련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보행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전담 부서 담당 인력 확충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 ④ 모든 특수교육 순회교사는 필수적으로 수업 실시
- ⑤ 경력 교원 배치 및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자체 규정 마련
- ⑥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 ⑦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장애인학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및 결과 보고('23. 하반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0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급))

3 특수학교(급) 다양화

추진목적

- ▶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특수교육기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선택권 확대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교지),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1) 특수학교(급) 확충

-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을 줄이고,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보호자의 불편 해소
 - 시도교육청, 특수학교(급)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신·증설 계획 수립
- 특수학교 설립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특수학교 시설기준 개정 추진
 - ※ 특수학교 시설기준 개정 수요조사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23) → 개정(안) 마련('24)

2) 특수학교 다양화·특성화

-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기존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 특수학교 신설 시 기존 학교와 교육과정 조정을 통해 학교급별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

【소규모 특수학교 추진 사례】

- ▲ 청주특수학교('23. 개교 예정, 유·초), ▲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24. 개교 예정, 고)
- ▲ 안성특수학교('25. 개교 예정, 유·초·중) ▲ 전북 동부권 특수학교('25. 개교 예정, 중·고·전공과)

○ 대학·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운영모델 확산**

- 시도별 여건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직업교육, 예술, 체육 등 분야별 중점 특수학교 운영 확대

※ 지역사회 개방, 복합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타 기관과의 교류활동 활성화

3)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우선 설치 계획 수립

- 중도중복장애, 시·청각 장애 등 장애유형별, 또는 예술, 체육, 직업 등 특정 분야별 특성화 특수학급 등 학급 운영 다양화

○ 장애학생의 교육·치료·돌봄 병행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 학급 운영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충남권(1), 경남권(1)),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전남권(2), 강원권(2), 경북권(2), 충북권(1), 전북권(1))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①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교육수요와 학급당 학생 수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

- 특수학교 신설 시 기존 학교의 교육과정 조정 등을 통해 학교급별 또는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확대 방안 모색

- 택지개발 예정지에 학교 용지 확보, 폐교 부지 활용 등 부지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②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신설 시,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추진목적

- ▶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 ▶ 특수교육교원 연수 확대 등 전문성 신장으로 특수교육의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호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동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시·청각장애교육 전문성 등 사회적 변화와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 관련 현장 의견수렴**
- 시·청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특수·일반학교)에 **교원과 학생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전보 유예 권장
* 점역·교정사/보행지도사, 한국수어통역사(교육용 수어 능력 평가·인증 교원 포함) 등
-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교원 중 보직교사 배치 권장**
- **교과 중점 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에 해당 전공 특수교사 우선 배치
- 도서 지역 또는 읍·면 지역 소재 특수학교(급)에 정교사(1·2급) 우선 배치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특수교사의 교수 능력 향상과 학생과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점자, 수어 등 특수교육 관련 **국가 공인 자격취득*** 지원

* **(예비특수교사)** 교사임용 시험에 특수교육 관련 가산점 부여, **(현직특수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시·청각장애학생 배치 특수학교(급) 우선 전보 등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검토

-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운영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연구*하는 학교문화 조성
 - * 특수학교(급) 여건에 적합한 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등
 - 자율적 특수교육 수업연구회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및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 확산 등에 기여
-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과지도 ▲교육과정 운영 ▲진로직업교육 ▲통합체육 ▲발명교육 ▲산림체험교육 등
 - ** ▲긍정적 행동 지원 ▲보조공학 역량 강화 ▲교육용 수어 능력 평가·인증 ▲건강장애학생 지도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 ▲통합교육 지원역량 강화
- 장애학생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 연수 실시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확대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 교육부 누리집 > 정책정보공표 > 교원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2 개정)'
- 산림복지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사 마음 건강 회복 연수 운영
 - * 숲체원(산림교육센터),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운영
 - ※ 교육부-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업무협약 체결('21.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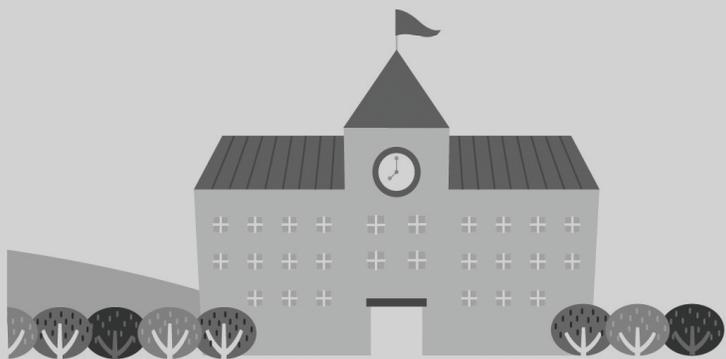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재활복지 미전환 치료 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기간제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기간제 교사가 표시과목을 재활복지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특수학교 교사 재활복지 자격 전환 연수에 참여 안내
- ② 국립특수교육원의 청각장애학생 담당 교원 교육용 수어 지도 역량 강화(기본, 심화) 연수 과정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협조
- ③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추진
- ④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가급적 경력교사 배치 및 신규교사 배치 시 경력교사 멘토링 지원
 - 특수학급 담당 교원의 불가피한 휴가 사용과 특수학급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보결 강사 인력풀 확보
- ⑤ 2023년 특수교사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임용 및 관리 철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II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추진목적

-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내실화 도모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체계 마련
 - * 「특수교육법」 외에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내 통합교육 관련 내용 강화
 - 모든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검토목록 마련 및 적용
 -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배리어프리'라는 '장벽 없는 정책'을 통해 교육청 구성원 모두 공존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 사업 시행 전 특수학교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요건 검토
-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근거 마련



- 장애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등 통합학급의 보편적 학습설계 적용을 위해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조정**(학생의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1~3명 감축 권장)

○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통합교육 인력풀 구성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관계기관, 대학 등과 상시 **협조 체제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 권장**
-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 (예시)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역할 〉

- ◆ **(위원 구성)** 지역 내 인력풀을 활용하여 특수교육 전문가*로 위원 구성

* 대학교수, 특수교육 수석교사·고경력 교사(20년 이상), 통합학급 담당교원, 상담사, 사회복지사, 행동지원전문가, 보호자 등('22. 173개단, 1,944명)

- ◆ **(역할)**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상담, 특수교육 교원연수, 통합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통합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진단·평가 기능,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학습·정보 지원 기능과 연계 운영 가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과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멘토)과 초·중·고교 특수교육대상학생(멘티)을 1:1로 연결하고, 멘티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수업, 학교 행사, 체험학습, 기타 생활 적응 등)을 지원

-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양성 대학과 연계한 교육 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등) 등 교육활동 지원 추진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설치를 확대하여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장애이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 인식지수**' 개발·적용

※ '학교장애인식지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교육부, 2022) 참고

○ 정다운학교 대상 '**학교장애인식지수**'를 시범 적용*하고, 활용성 제고를 위한 **동형검사 개발 및 온라인 검사 체계 구축**

* ('23) '정다운학교' 시범 적용 → ('24) 초·중·고 통합학급 적용

【‘학교장애인식지수’ 구성 내용】

영역	내용	활동 주제(예시)
① 인식	어떻게 바라보는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인권), 공동체적 시민의식 함양 등
② 이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다름과 차이의 구분, 장애특성 이해 등
③ 정서	어떤 느낌, 기분, 감정이 드는가?	공감, 정서 함양 활동
④ 실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장애학생과 상호작용, 다양성에 대한 옹호 및 문제해결 등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 또는 권역별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②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대학 연계 지원 확대
- ③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 ④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급 정원 감축 조정 방안 마련
- ⑤ 정다운학교 대상 ‘학교장애인식지수’ 시범 적용 안내(‘23. 2학기 예정)

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추진목적

- ▶ 교원의 통합교육 연수 확대를 통해 통합교육에 대한 현장 역량 강화
-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체계 강화로 통합교육 활성화 도모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제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교원의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신고교육 포함)을 특수교육 관련 필수 교과(1과목)로 편성하여 매년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 안내 및 권고
 - ※ (근거) 교원자격별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 (교(원)장 연수)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 특수교육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이수(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포함)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특히 순회 교육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권장
- (특수학급 교사)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 협력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 (예비교사) 교육실습에 통합학급 운영 등 통합교육 관련 실습 포함 권장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확산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 학교과정별 보편적 학습설계, 문화예술체육, 장애유형별 협력교수 모형 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사례 콘텐츠(에듀넷 티-클리어, 에듀에이블)」 참고

- **학교 구성원 간 통합교육 공감대 형성·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통합교육연구회 조직·운영 활성화**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참고) 유치원 통합교육 관련 자료〉

- ◆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 (교육부·인천교육청, 2017)
- ◆ 장애영아 교육 및 장애유아 통합교육 우수사례집 (교육부·전북교육청, 2017)
- ◆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 (국립특수교육원, 2018)
- ◆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21)
-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유아용) (국립특수교육원, 2021)
-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국립특수교육원, 2022)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일반학교 교(원)장이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집합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 과정 (워크숍 포함) 지원
- ②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확대하고, 학년 초 장애 이해 관련 워크숍 실시
- ③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치 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연수 이수자 등 우선 배치
- ④ 예비교사 교육실습에 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당 학교에 안내
- ⑤ 통합교육 관련 연구 자료, ‘정다운학교’ 운영 계획 및 우수사례(에듀넷 티-클리어(<http://www.edunet.net>) >연구학교) 연수 콘텐츠(에듀에이블(eduable) > 통합교육) 활용 안내(‘23.3.)
※ 2023 통합교육 연구학교 성과공유회(‘23. 12. 예정) 참여 안내 및 독려
- ⑥ ‘정다운학교’ 운영교 확대 및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우선 배치
- ⑦ 통합교육 연구학교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⑧ 통합교육연구회(전문적학습공동체 등) 운영 지원 및 성과 공유

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추진목적

- ▶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조성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인식 개선 등) ▲동법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모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교과용 도서 연계 장애인식개선 수업사례 발굴·확산
 - 유·초·중·고 일반교사 대상, 교과용 도서(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와 연계한 다양한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전 운영
- 장애학생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장애이해교육 운영을 위해 장애학생이 포함된 '장애인식개선교육지원위원회'* 구성 권장
 - * 제19회 아동총회 결의문 채택 사항으로 시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마련 권장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장애인의 날(4.20.)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 유(유아용 3D 애니메이션), 초(대한민국 1교시), 중·고(장애이해교육 드라마)
 - ※ 초·중·고교 특별기획방송 활용 수업 시 2차시 분량의 시간 확보 권장
-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및 장애예술인(단체) 또는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 공연' 지원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한 체험형 무장애 장애이해체험관* 설치
 - * 무장애 시설, 제품, 재활보조 공학기기 등을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험관
 - ※ 시도별로 조성된 안전체험관 또는 특수교육원을 활용한 체험관 설치 확대('23 하반기 2개관 예정)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공개의 날 등에서 전문강사, 우수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 교육 실시
- *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공감 자료 활용(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에듀에이블-장애공감)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 전문가 콘텐츠 개발과 학생, 교직원 공모전, 백일장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콘텐츠의 다양화
- 인터넷, 옥외매체, 방송, 인쇄물을 활용한 장애공감문화 캠페인 지속 실시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유·초·중·고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이해(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
- ② 각급학교에 **장애인식개선 수업사례 공모전** 안내 및 참여 독려('23.6.)
- ③ 시도별 장애인식개선교육조례 제정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권장**
- ④ 장애이해체험관 운영 및 각급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안내
- ⑤ 국립특수교육원 제1회 전국 장애공감포스터 공모전 참여 안내 및 독려

4 장애학생 인권 강화

추진목적

- ▶ 장애학생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 성교육 내실화

※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3항, 제13조(특수교육실태조사) 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https://www.nise.go.kr/onmap>) 운영
 - * 사용자 위치 기반(GPS) 기관 정보(법률, 폭력피해 지원, 상담, 교육, 의료 등) 제공 및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신고·제보 시스템으로 국립특수교육원·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 기능을 개선*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사안 접수 및 조치
 - * ① 시도교육청별 시스템 접속 권한 부여, ② 장애학생 관련 사안 인증 절차 마련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내 지원기관 정보 등록* 및 사용자에게 안내·홍보
 - * 시도교육청 기관별 계정으로 지원기관 직접 등록
-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을 설치하여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 실태조사 매년 실시

〈(참고)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개요〉

- ◆ (목적)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예방·대응 지원
-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 (내용) 2022년 2학기부터 2023년 1학기 동안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
 - ※ 조사표는 학교폭력, 학습권리, 학교생활(3개 영역)로 구성
-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초등학교 4학년 ~ 전공과) 및 보호자, 교원
- ◆ (시행) 17개 시도교육감 (주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관계부처(청) 주관, 장애학생 인권 관련 실태 점검 협조

〈(참고) 관계부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장실습처 장애학생 면담조사(연 1회)
- ◆ **(보건복지부)**
 - 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시설 내 특수교육대상자 면담조사
 - ②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교육에서의 차별, '21.~'22.)
- ◆ **(병무청)** 정기 복무점검 시, 특수학교 사회복지무원 면담조사(연 2회)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 장애학생 행동지원과 인권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특수교사 중 전직 희망자 우선 배치)
 - ※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적극 참여

-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권교육 및 행동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핵심교원***을 양성하여 **관내 전문가 인력풀로 활용**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 양성 직무연수」 및 시도교육청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 이수자 등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참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 ◆ **(구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체적 역할 명시
 - **(필수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장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연구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특수학교(급) 교장(감) 또는 수석교사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학교폭력·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 **(기타위원)**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인권전문가 ▲의료전문가 등
- ◆ **(역할)** 현장지원(정기/특별), 교육 및 연수, 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 **현장지원** 시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활동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제공, 기타 학교 지원 활동 등 실시

- **(정기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장애학생, 교사 상담 실시

※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필수 참여하되, 팀장(계장)이 참여하기 곤란할 경우 팀원 참석

- (특별지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지원 실시

○ **매월 1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 인권지원단 전월 현장지원 결과 제출(매월 5일까지) → 시도교육청 결과 승인 처리(매월 15일까지) → 국립특수교육원 시도별 취합·점검(매월 30일까지) → 교육부 보고(매월)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 사안 조사** 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또는 특수교육전문가가 자문위원(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협의체 구축, 정기간담회 실시 등)하여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 강화

* 특수학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 협의체 구성 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https://www.nise.go.kr/onmap>)' 활용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유·초·중등 학교 과정별 관리자·교원을 대상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 연수를 집중 확대하여 교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풍토 조성

※ (국립특수교육원) 「(관리자 및 교원) 장애공감문화조성」 연수(5시간 이상) 실시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인식, 자기보호 등)을 **함양**하고, 성교육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참고)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참고자료〉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누리집: 인권교육자료, 인권문화콘텐츠(별별이야기 등)
-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누리집: 장애공감(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등) 자료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 관련 자료
 -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자료(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서·학습장애)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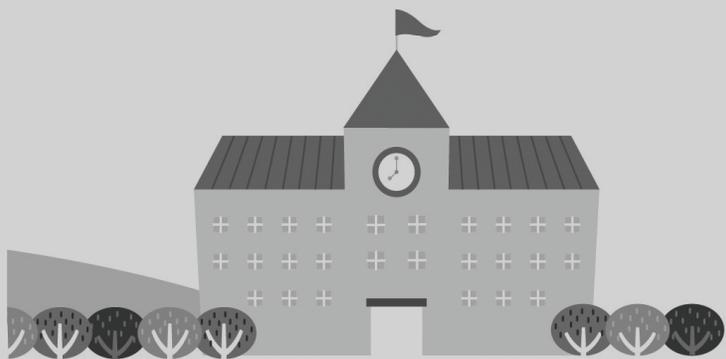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교육청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계획 수립(23.1.)
- ②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교원·보호자 대상 실태조사 안내 및 안내 영상(콘텐츠) 상영 등 홍보 강화
- ③ 특수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3시간 이상) 의무 실시 안내
 - 시도교육청 국가 시책 추진 평가 점검 지표* 항목에 포함
 - * ③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3-1. 학교폭력 예방 역량 지원)
 - ※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 실행계획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6049, '22.11.1.) 참조
- ④ 중대 사안 발생 시 시도교육청을 통해 국립특수교육원 즉시 보고(공문)
- 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신고) 운영 및 조사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홍보 및 탑재 기관 현행화 추진(수시)
- ⑥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대 및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청 학교폭력 담당과에 보고
 - 학교(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는 학교폭력 담당과,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학생이 피해 또는 가해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9조의4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상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연 1회 이상 확인·점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⑦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은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⑧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는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사이트를 통해 공유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Ⅲ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추진목적

- ▶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지원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스마트 미래교실, AI활용 교실 등

** AI 학습보조 로봇, 실감형 콘텐츠 체험기기, AI형 스마트 기기 등

※ 특수학교 : 미래교육 교실 구축, 특수학급 : 에듀테크 기기 보급 확대

- 의사소통, 정서안정, 흥미유발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지능형 로봇 활용 확대

※ (예) AI로봇(커뮤니케이션 스킴):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대화 문맥 및 상황인지분석이 가능하며, 일상생활 장면(장소, 대상)별 의사소통 훈련 시 활용

- 지역 내 AI 활용·융합교육 거점 역할을 하는 ‘AI 교육 선도 특수학교’ 지정·운영

- 특수학교 AI교육 모델 개발, 지역 내 우수사례* 발굴·확산, AI교육 전문가 양성, AI 교육 컨설팅 및 성과 관리 실시

* AI 융합 특수교육과정 등 특수교육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AI기술 적용 사례 발굴 등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현장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학생 AI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원연수, 컨설팅 등 역할 수행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
 -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nise.go.kr)-수업지원자료’ 탑재자료 활용
-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개발·보급**
 - * 비대면(예; 무인정보단말기) 서비스, 온라인 생활서비스(예; 증명서 발급) 활용 등
 -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nise.go.kr)-특수교육공학’ 탑재자료 활용
-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선도학교 및 선도교원을 활용한 **컨설팅**** 추진
 - * ▲특수교육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활용하기 ▲SW·AI교육 수업하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만들기 ▲AI 활용 특수교육 수업하기 ▲AI형 에듀테크 활용하기 등
 - ** ▲장애유형별 AI 기술 적용하기 ▲교육과정과 AI 융합하기 ▲지역 교육기관 활용 등
- 지역·민간 인프라*와 연계한 **체험형 디지털 교육(SW·AI) 프로그램 제공 확대**
 - * 지역 SW교육기관 방문,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장애학생 SW대회 개최 등
- **체험·실습 중심의 SW·AI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민간 인프라* 활용 및 방학 중 **장애학생 SW·AI캠프 운영**
 - * 지역 SW교육기관 방문,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장애학생 SW대회 개최 등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운영('22~)**
 - * 실시간 음성 인식·자막 지원, 개별 화상수업 등 기능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

【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 】

 <p>(학습관리) 온라인 수업 진도</p>	 <p>(오늘학습) 수학 콘텐츠</p>	 <p>(화상수업) 음성인식 자막지원</p>
--------------------------------------------------------------------------------------------------------------------	-----------------------------------------------------------------------------------------------------------------	----------------------------------------------------------------------------------------------------------------------

3)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확대

-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수학급 학생에게 VR·AR, AI로봇 등 에듀테크 기반 체험 기회 제공

【 찾아가는 상상버스 체험 프로그램(예)】

			
(실내) AI로봇(클로이)체험	(체험버스) XR모션센서	(실내) 코딩로봇체험	(체험트럭) VR자전거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시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장애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및 SW·AI교육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반영
 - * (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내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환경개선, 정보화 기기 보급 등
- ② 특수교사의 디지털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운영, 연구회 지원 등 시도별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 ③ SW, AI 선도 특수학교 및 선도 교원을 통해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역량 연수, 연구회 운영, 학교별 적용 사례 안내 등 컨설팅 제공
 - ※ 시도교육청은 관할 지역 내 국립특수학교도 포함하여 특수학교(급) 컨설팅 실시
- ④ 장애유형별 디지털 리터러시 및 SW·AI 교육 관련 자료개발 및 지원

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목적

-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및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교육부 고시 제2015-3호(교육부 고시 제2022-3호 일부개정 포함)

1) (특수학교)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학교의 특성, 교원·보호자·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기본 교육과정은 30%, 공통 교육과정은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다만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 감축 불가
- 고등학교 과정에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교과로 편성 가능
-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특수학급·통합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가능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교수·학습자료 활용 지원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4)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용도서 활용 지원
- 시도교육청별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학교(급) 우수 운영 사례 발굴·확산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평가 지원자료 개발
 - * 적용 일정: ('24) 유치원, 초 1~2 → ('25) 초 3~4, 중·고 1 → ('26) 초 5~6, 중·고 2 → ('27) 중·고 3
 - 초등학교 1~2학년군, 3~4학년군, 중·고등학교 기본 및 공통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개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 지원자료* 개발·보급
 - * 공통 및 기본 교육과정 평가준거 성취기준 풀(POOL) 및 평가 방법 예시 등
 -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가 과정 연수* 실시
 - * 국립특수교육원의 ▲기본 교육과정 평가 역량 강화 ▲특수교사 온라인수업 역량 강화 ▲특수교사 발명교육 등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 ※ 시도교육청은 관할 지역 내 국립특수학교도 포함하여 특수학교(급) 컨설팅 실시
- ②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교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확대 권장
- ③ 장애영아 및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련 내용 상세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④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수·학습자료 지원
- ⑤ 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점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⑥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강화
- ⑦ 시도교육청 단위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현장 지원 활성화
- ⑧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지원에 따른 현장 의견수렴 및 안내 협조
- ⑨ 2022 개정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에 따른 현장 검토 협조

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추진목적

-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매 학년 시작 2주 이내 구성**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지원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과 보호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학교별·학년별 개별화교육 관련 부모교육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를 학기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2)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 교육과정과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개별화교육에 활용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실행 방안 모색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안내 자료 개발·보급*
 -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기능개선 사항 안내 자료('23년 하반기 예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9.10.23.): 발달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구체적 지원 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 개선 요망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인근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관리 강화
- ② 일반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와 역할 확대 방안 강구
- ③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보호자 참여 보장 및 의견 수렴 절차 준수
- ④ 각급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운영현황 점검 강화
- ⑤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과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관련 연수·컨설팅 내실화
- ⑥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연구회 운영 지원,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우수사례 확산
- ⑦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행동중재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행동중재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안내
- ⑧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권장·안내
 - * (참고)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을 및 운영지원 자료 개발 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22)」
 -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기능 개선 사항 안내 자료 개발·보급 ('23년 하반기 예정)

4 순회교육 지원 강화

추진목적

-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 요구 등에 대한 진단·평가 및 적절한 교육 지원으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1) 순회교육 대상과 지원 범위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순회교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활용하여 순회교육의 지원 범위와 내용 결정
- 순회교육대상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 가능
 -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심의 결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5681, '20.7.14.)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실시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 의료기관에 설치한 학급(이하 '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전담인력(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정규교사 등) 배치 및 순회교육 지원 등 교육 지원 강화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순회교육 실시
 - 일반학교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확대

〈(참고)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배치 학생 지원 모델(국립특수교육원, 2019, 재구성)〉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비고(공통)
교육과정적 지원	협력교수	통합학급 교사의 교수적 수정 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 담임교사 자문
사회적 관계 지원	도래관계 지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및 교직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자원 연계 지원	특수교육대상 조기발견 지원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 (순회교육 수업일수) 매 학년도 150일 기준으로 각급학교장이 결정, 30일 범위내에서 학생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감축 가능
- 순회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 배치환경* 및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순회교육 운영 도움 자료 개발·보급 등

* 재택(가정, 시설, 병원) 순회교육,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하여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통학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하도록 유도
 - ※ 순회교육 학생 중 학교 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배치
- ②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현황 조사('23. 하.)
- ③ 순회학급에도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한 학급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 ④ 순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실시

5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추진목적

-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재능 발굴 및 여가생활 다양화 도모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 1인 1문화예술교육, 장애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 ※ 비장애학생과의 통합 문화예술 체험활동과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
- 문화예술행사(공연, 전시회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학생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동*** 지원
 - * 해외방문 공연, 해외단체초청 공연, 국제 장애학생 미술활동 전시회 등
-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로 문화향유권 보장
 - 지역사회 문화·예술 관계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 기회 제공
 - ※ (한국관광공사)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장애학생) 문화관광체험 여행 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 여행 프로그램 등
 -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과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등을 활용한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험 방안 마련 권장
 -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문화예술 우수사례 발굴·보급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체육 인재 발굴 기회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연계체계 구축
 - * 문체부, 장애인체육회, 관련 단체 및 해당분야 전문가
- 장애학생 체육대회 적극 참여 통한 체육 인재 발굴 기회 확대
- 전문가 멘토링 및 체육 분야 진로 체험 등 인재 발굴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의 체계적인 건강·체력관리를 위한 체력평가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지역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22. 12개소) 등과 연계하여 건강체력평가 지원 및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운영 매뉴얼 개선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체력회복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및 스포츠 강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확대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서 개발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적극 장려
 - * 장애·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스포츠(통합축구, 통합농구, 통합볼링 등)
 - ※ 통합체육 교구나 운영비가 필요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통합체육수업 교실 운영비 지원사업 적극 활용
- 교육청별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통합스포츠 운영학교 공모 등) 강화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연수 확대
 - 통합체육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수업 지원
 - * 초·중등학교 교사 대상 통합체육 연수 및 우수교사 해외연수
-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대상 특수교육(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관련 직무연수 실시
 - * 스포츠강사 등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인력이 직무연수를 이수할 경우, 재채용 시 우대 권장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장애학생 체육인재 발굴을 위한 장애 관련 체육대회 적극 참여 지원
- ② 교육청별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한 체력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③ 국립특수교육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일반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 ④ 관계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의 장애학생 지원 사업 적극 활용 및 홍보

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목적

-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건강장애 등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적 지원 및 행동중재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학생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별표(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22.6.)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에 추가된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 ※ ‘중도중복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안내자료’ 참고(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3698(‘22.7.1.))
-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1/2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가능
-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향상 연수 운영 및 원격콘텐츠 개발**(국립특수교육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모델** 발굴·확산
 - 생활기능 중심 교육 등 교육과정 전반에서 활용가능한 **지도용 가이드 북을 중도중복장애 선정 유형별*로 개발·보급**
 - * 지적장애(또는 자폐성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시도교육청(학교)과 지역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 협력체계 강화 지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병·의원, 종합병원 등

※ 추진 현황(교육청 수): ('20) 5개 → ('21) 10개 → ('22) 13개 → ('23) 14개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의 지원과 간호사 면허가 있는 보조 인력 등 전문 인력 배치·확대

- 시도교육청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및 치료지원전담팀*을 통해 학생 건강·안전에 필요사항 컨설팅 제공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에서 지원받는 의료적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예시)▲가래흡인(석션) 지원 시간과 횟수 ▲섭식 지원 형태와 방법 ▲호흡 상태 ▲복용 약물 종류 및 방법 ▲의료적 지원 제공자 등

- 학생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정보 공유를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 의료적 지원 인력(의사, 간호사, 치료지원 인력)의 참여와 소견 반영

- 의료 관련 전문인력풀로 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 건강관리 교육 및 교내 의료인력 대상 장애이해교육 등 전문 연수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 - 교내 의료인력(간호사 등) 대상 장애이해교육, 학교문화 등 연수(신설)

【 제도 개선 사항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948(2022.9.8.) 참조) 】

① 의료기관과의 계약 간소화

- (애로사항) 교내 의료적 지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하며, 공익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이끌어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 난항
- (제도개선)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제123회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2.8.31.)'에 따라 교육청(학교)에서 의료기관과 계약 시 수의계약 적용 검토 가능

② 교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처리

- (애로사항) 의료인력의 교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주체 불명확
- (제도개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법률 검토 결과('22.8.4.)에 따라 교내 의료행위 중 사고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검토 가능

③ 교내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료인력의 범위 확대

- (애로사항) 「의료법」 상 의사, 간호사 등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교내 배치에 한계
- (제도개선) 복지부 유권해석('22.3.17.)에 따라 간호사 보조수행 시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가능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및 대체학습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거점지원센터 설치·운영

* (시각장애) 점자·확대문자(디지털 형태 포함) 등 / (청각장애) 수어·자막 서비스 등

- 청능훈련, 보행훈련, 수어통역, 점자지도 등이 가능한 특수교육 전문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권역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거점지원센터로 운영 중인 시·청각장애 특수학교 지원* 확대

* 통합교육 지원 전담교사 지정, 특수교사 전보제도 개선 등

-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의사소통 평가, 학습매체 평가, 보조공학 평가, 보행 평가 등

- 권역별 거점지원센터와 지역의 관계기관(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지원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4) 건강장애학생 지원

※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교원 배치

- 시도교육청별 관내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병원학교 추가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병원학교 설치·운영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국립특수교육원 - 병원학교 교원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 운영(신설)

- 건강장애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방안 마련 및 위탁교육의 경우 **개학 이전 위탁교육기관에 위탁 여부 통보**

- **(학적처리)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서 학적 처리**

- **(출결)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 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은 해당 기관의 출결확인서를 따름

※ 초등은 1일 1시간 이상 중등은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 시 출석 인정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병원학교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대상자 등 포함)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의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시도교육청별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격차를 최소화하는 **학교 복귀 프로그램 필수 운영**

※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과 또래 친구를 포함하여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권장

☞ (예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학교 출석 체험 프로그램 등

5) 행동중재 지원

※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2, 제28조(관련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 행동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거점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

- 권역별 거점 단위에서 대학, 의료기관 등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확산

- 행동중재 우수사례 발굴·안내,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과정 연수, 행동중재 프로그램 컨설팅 및 성과 관리 등 추진

○ 특수학교(급) 교사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와 장애학생의 심각한 행동 문제에 대한 **집중 지원 확대**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현장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중재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교 내 행동중재 계획·실행·평가, 컨설팅 등 지원

* ▲(운영과정) 전문자격증 과정, 집중연수과정 등 ▲(운영방법)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와 연계 대학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청 자체 추진 등

※ 전문가 양성 과정 참여 대상 자격, 역할, 선정방법 등은 시도교육청의 자체 기준 마련 추진

- 심각한 행동 문제에 대해 행동지원 전문가, 교육청 자문위원, 행동지원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집중적 행동중재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사례관리 사업(프로그램) 운영 권장

- 교육청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하여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구성) 행동분석전문가, 교수, 행동지원 전문교사,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

▲(역할) 행동분석(행동에 대한 기능평가) 및 대처방안 지원 교원 연수 등 지원

○ 가정-학교-사회에서 중재 일관성 및 연속성과 중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연계·협력* 강화

* 가정-학교-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22년 기준, 10개소) 등

- 학교, 가정과 연계한 행동지원 방안 등의 정보·상담 제공

〈 (참고) 장애학생 행동중재 참고자료 〉

- ◆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자료 (서울시교육청, 2021)
- ◆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운영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 2020)
- ◆ 장애학생 위기상황별 대처 행동 매뉴얼 (인천교육청, 2019)
- ◆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매뉴얼 (부산교육청, 2014)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중도중복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진단·평가 및 선정
- ② 시도교육청별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 강화(시도교육청 특수교육 편성·운영 지침에 반영)
 -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중장기 교원 및 지원인력 수급 계획, 시설·설비 정비 및 확충,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및 시범학교 운영 등
- ③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용 가이드북 개발 등으로 활용
- ④ 특수학교가 지역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업무협약 체결 등 의료적 지원 및 행동중재 연계망 구축 지원
- ⑤ 교내 의료인력, 병원학교 교원 대상 연수 운영(국립특수교육원) 안내 및 추천
- ⑥ '23년부터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성과공유회를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므로 건강장애학생 지원 관련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주관교육청에서는 예산·운영 등 관리 철저
- ⑦ 국립특수교육원의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연수과정에 일반학교 및 거점지원센터 등의 담당교사 참여 지원
- ⑧ 시도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행동중재 지원 분야) 운영 및 관리 계획 제출('23. 2.)
 - ※ 국가시책사업과 교육청 자체 사업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 예산을 구분하여 함께 작성

7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추진목적

- ▶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 도모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발굴·확산
 - * AI, SW, 음악, 미술, 체육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 ※ SW·AI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디지털 적응도가 높은 예비 특수교사 적극 활용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지침을 수립하여 지원 규모와 우선 지원 대상 선정
 - ※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의 희망자는 필수 지원

2) 돌봄 지원체계 강화

- 장애학생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 협력체제 강화
 - ※ [국정과제 84]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유·초)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초등전일제 교육 등 교내 방과후활동·돌봄교실 참여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인력 배치* 확대
 - * 시간제 지원인력 배치, 보조강사 지원 등
- (초·중·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등 지역 내 돌봄 지원 사업 간 연계 확대

3) 방학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권장**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일반학생의 함께 참여하는 통합방학프로그램 발굴·확대
- 지역사회 관계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예비특수교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봉사활동 참여 권장

4)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자 지원

- 특수학교(급) 방과후교육·돌봄 관계자 연수, 워크숍 개최 등 **담당 인력 네트워크 형성** 추진
 - 방과후학교·돌봄 프로그램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등 역량 강화 지원 및 처우개선 노력 지속
- *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담당인력 등

[참고] 장애학생 교외 방과후활동 및 돌봄 관련 서비스

부처	서비스	돌봄 등 지원 내용
교육부	방과후 자유수강권	예술·체육, 진로·직업교육 등 분야 외부기관 이용권(바우처) 지급
	치료지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및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지원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대상 월 44시간(월~토요일 09시~21시) 여가활동 및 자립준비활동 등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대상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정대상 돌봄서비스 또는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연간 960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언어·청능·음악·미술·행동·심리·감각·운동재활 서비스(바우처) 지원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등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 추진
- ② 국립 특수학교(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시도교육청 주관 방과후학교 및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④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돌봄 해소 지원
- ⑤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학교 연계형 제공기관 및 방과후 활동 협력학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⑥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돌봄 운영 현황 조사(학기별 1회)

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추진목적

-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 각급학교의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참여 보장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업무 범위, 장애학생 지원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시안) 마련을 통해 지원인력 관리·운영 지원
 - ※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23.상반기) → 매뉴얼(시안) 마련('23.12.)
- 특수교육 지원인력 채용 시 장애인학대, 성범죄 등 범죄 이력 조사 등을 통해 자격조건 관리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주기적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를 실시하고, 가능한 범위 내 순환근무 점차적 확대 추진

〈 (참고)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업무 〉

-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항
 - ☞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 담당
 - ※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특수교육정책과-4022('18.8.20.))
- ▶ **(주요업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역할을 담당
 -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지원,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 욕구 보조)**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의복 착·탈의, 건강 보호 등 안정된 학교 생활을 위한 지원 활동
 - **(학교 적응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 (연수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방법, 복무규정 등
 -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강화 기본 과정」 등 활용
- (신규 인력) 직무연수 30시간 이상 의무 실시(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
- (기존 인력)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에서 직무교육 강화(연 15시간 이상 실시)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남학생 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고려한 배치
 - 제25조(특정 자격·전공자등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의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경우 그 소집 월의 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별표 4」의 소집 순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자격·면허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를 직권으로 선발하여 해당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소집 통지할 수 있다.
 - [별표4] 특정자격·전공자 등 소집 순위 :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 (1순위) 특수교육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자격 취득자
 - (2순위) 교대·사범대 재학 및 졸업자, 교사 자격 취득자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장애학생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재배치 금지
 -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제10항: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이하 이 항에서 "복무기관"이라 한다)로 재지정 할 수 없으며, ...
 - 5. 장애학생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실화
 -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기관 등에 위탁하여 직무교육 실시 예정('23년 목표 140명)
 - ※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시범운영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21. 106명, '22. 123명 신청)

- (신규요원) 시도교육청별 16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배치 3개월 이내)
- (기존요원)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장애인권·직무역량 교육 등) 실시

〈(참고)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 실시 근거와 내용〉

▶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 실시 관련 근거

-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 내용

-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직무교육과정(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장애 인권교육과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규정」[별표1] 사회복지요원 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 (세부과업) 학습활동, 일상생활지원, 보행 및 이동 지원, 운동 및 재활 지원, 차량 승하차 지도·식사 등

2) 치료지원 내실화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여건 개선
 - 장애인복지관, 관련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인프라 확장**
 -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적절성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위한 시도협의체 운영
- 치료지원제공기관별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 행정점검 실시**
 - 치료지원 대상자의 치료지원 내용, 방법, 발달사항에 대한 기록 관리 철저

3)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9]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이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각급학교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
 - * 평가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항의 제시 형태, 반응 형태, 검사 시간, 검사 환경 등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평가 전·중·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력
 -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 2016) 참고
-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지원방안 강구**
 -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자료」 (교육부, 2021) 참고
- **특수교육기관-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방문형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 보조기기 수리·세척, 교직원 및 장애학생 대상 보조기기 활용교육 등
- **시도교육청과 지역 보조기기센터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지원모델 창출**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통학 차량* 및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배치 등 통학지원 강화**
 -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시 통학차량 신고(「도로교통법」 제52조), 동승보호자 탑승 등 안전조치(동법 제53조),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이수(동법 제53조의3)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현장체험활동,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이동 등 편의 제공**
- **각급학교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담당자 교육** 및 실태점검 철저**
 - * **(적정 설치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설치기준을 전부 충족하여 설치한 비율
 - (단순 설치율)**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설치기준에 미달한 비율
 - ** 국립특수교육원(원격,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과 한국장애인개발원(집합/원격,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에서 실시하는 교육 적극 참여 권장

-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 수립·시행
- 적정·단순 설치율 50% 이하인 유·초·중·고·특수학교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후속조치 결과 관리(3월, 9월)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확대, 복무 관리 및 연수 등 운영 관리 철저
 -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매뉴얼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시도협의체 운영 협조
- ② 사회복지요원 배치·관리 및 교육 강화
 - 사회복지요원은 남학생을 담당하도록 배치하여 여학생 지원에 따른 민원 발생 예방
 -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철저
 - ※ 사회복지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확인
 - 특수학교 배치 사회복지요원 대상, 병무청 복무지도관의 현장 점검(연 2회)
 - 신규배치 사회복지요원들의 업무 적응을 위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③ 2023년도 방역 등 지원인력 배치 희망 학교 지원 노력 지속
- ④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자체 계획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
- ⑤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교육청의 경우, 지역보조기기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지원 및 운영모델 창출
- 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수요 파악을 위한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학교를 우선하여 연차별 개선계획 수립, 예산확보, 개·보수 추진
- ⑦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정보공시 안내('23.5.)
- ⑧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 제출('23.11.)

9 장애학생 안전 강화

추진목적

- ▶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 인력 배치, 장애학생 자기 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통학 환경 개선(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 해당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훈련 실시
 - ※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한 안전 훈련 실시 권장
- 안전 대피 훈련으로 파악한 재난상황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학생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 ※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교육부·경남특수교육원), 학교안전정보센터(교육부), 국민안전포털(행정안전부) 누리집의 참고자료 활용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점검 강화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 점검의 실시·결과 보고 등)에 따라 안전 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 ※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 미달 특수학교는 시설 연간 정비계획 수립·시행

-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안내, 환기·소독실시 등
- 특수학교(급)의 노후된 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 특수학교 재난위험 시설 해소 및 소방안전시설 개선 지원
-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특수학교에 간이체육시설, 체육관 등 설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 피해 예방

4)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노력 지속

- 학교보건 등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단지역 악취·소음·먼지 등 피해,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장애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 소방서 간 협의체 운영 지원
- ②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애학생 학년별 안전교육(교육시간,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 보고
- ③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철저
- ④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및 수업환경 개선 추진

10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추진목적

- ▶ 장애학생 미래생활 역량(자립생활 및 직업재활 역량 등) 강화
- ▶ 개인의 진로 희망에 따른 사회 참여 기회(진학, 취업, 평생교육 참여 등) 확대

※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 등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초등학교(5, 6학년) 과정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을 통한 진로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장애학생의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 초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중학교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고등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등과 연계 운영
 -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고등학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지역 중심 맞춤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 **예술·체육 분야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중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 ※ 재능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한 개 이상 운영 권장
- 학교 졸업 이후 교육기회 확대
 - 특수학교 전공과 중심에서 **대학 연계 전공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교육기회 다양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지원 강화
 - * 특수교육기관, 지역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으로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실습 운영 개선 방안 마련
 -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방안 연구('23.11.)
 - 현장실습 사전 교육(산업안전보건·노동인권교육) 콘텐츠 개발('23.12.)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 현장 컨설팅 등 운영('23.4.~12.)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에 따른 시도교육청 인사규정 정비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사 연구회 및 연수 운영 권장

2) 관계부처(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 **장애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 사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된 현장실습 지원**
 - *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학교 내 일자리사업 ▲대학 및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등
- 학생 특성을 고려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 지역사회 내 일자리 수요가 있는 산업체 현장에서 장애인 취업을 목표로 한국장애인개발원(직업재활 전문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이력 관리**를 위해 **범부처(교육부-고용부-복지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고도화**
-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역 취업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대학(산학협력단),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3)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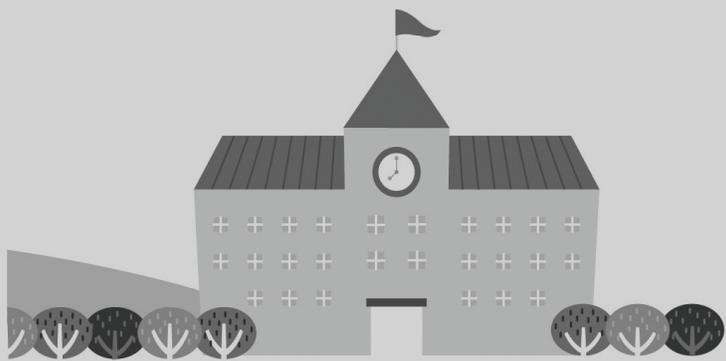
- 고교학점제로의 점진적 변화 및 현장 안착을 위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추진**
 - 학생의 진로·흥미에 맞춰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점제를 기반으로 학생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 ('23) 부산해마루학교, 성은학교, 한길학교, 경남혜림학교(4교)
 -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으로 단위학교 안내,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컨설팅 지원
 - *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연구학교 중심 컨설팅 실시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용 자료 개발·보급***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등 현장 안착 지원
 -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2종), 메타버스 활용 홍보 콘텐츠(1종)('23.12.)
 -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이해 워크숍('23.1.),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실시('23.2.)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 수립·제출('23.2.)
 -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단'을 구성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팅 지원
- ② 시도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및 교육청 자체 사업 등을 포함한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 운영 계획' 수립·제출('23.3.)
 - 시도교육청 차원의 특수학교 학교기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 '학교·공공 기관·대학 내 일자리',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포함하여 수립
- ③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 진로 및 직업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권장
- ④ 장애학생 진로·직업 이력 관리를 위한 나이스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활용 안내('23.3.)
- ⑤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점검 철저('23.4~11.) 및 결과 제출('23.12.)
- ⑥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일자리 수요조사('23.12.)

IV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IV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강화

추진목적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31조(편의제공), 제32조(학칙 작성),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5조의2(사회적 인식개선)

1)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추진

※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 ('23~) 센터 운영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기능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 •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
|--------------------------------------------------------------------------------------------------------------------------------------|---------------------------------------------------------------------------------------------------------------------------------------|

○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 운영

-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 확대 추진('22. 8교→'23. 10교)

- 진로·취업 지원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거점대학의 역할 강화

○ 대학별 지원체계 강화

-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22. 305개) 또는 지원부서를 설치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전문성* 강화

* 장애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관련 자격을 갖춘 자

- 안내자료* 제작·배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컨설팅 등 지원하여 개별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 전문성 강화 유도

* 매 학기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 장애대학생 법정 지원 사항,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지원 사항 등 포함

※ ('23) 실태조사 → ('24~) 컨설팅 운영

2)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교육과정 모델 개발

-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학위, 비학위) 모델 개발, 문화예술 특성화 대학 발굴 등 수요자 중심 교육 기회 확대

※ ('22) 대학별 운영 사례 조사 → ('23) 정책연구 → ('24~) 운영모델 확산

○ 대학체험·적응 지원

- 장애학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23. 26억원)

* 전공·교양 수업 체험, 진학 정보제공 및 컨설팅, 부대시설 이용 등 (시도교육청-대학 협력)

** 대학 생활(수강, 과제 제출, 시설 이용 등) 관련 OT, 전공 및 진로 선택, 학습결손 지원 등

○ 지원인력·보조기기 지원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인력·기기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개선*

* ('23) 개인 대상 학습보조기기 지원 단가 인상 및 지원 물량 확대 등 추진

○ 정보제공 기능 강화

- 장애인 특별전형 등 대입 관련 정보와 장애대학(원)생 지원 정책, 대학교 지원 정보 등 통합 제공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ble.com),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등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대학 진학 희망 학생 대상 진로 상담 지원 및 입학전형 등 관련 정보제공 지원(상시)
- ② 고등학생 대상 대학 생활 체험 지원 사업 운영('23.2~)

2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추진목적

- ▶ 양질의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강화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제19조의2(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정과제 84-3(교육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84-5(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1)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를 통한 지역단위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역별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단계적 확대
*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강화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현황: ('20) 5개 → ('21) 15개 → ('22) 32개 → ('23안) 53개
- 지역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보고회 등을 통한 지역단위 활성화 지원

2)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한 장애인의 학습 자율성·선택권 강화

- 장애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23년 3,000명)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확대하고 바우처 이용·정산 절차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3)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확산

-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 장애인 문해교육 기회 증진 및 학력인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반응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4) 장애인 평생교육 통계 기반 강화

- ‘장애인 실태조사(복지부 주관 3년 주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조사·제시*하고 (‘23~), 장애 유형별 참여 실태 및 수요 등 조사
 - * (현행) 평생교육 6대 영역별 참여 경험 여부를 토대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추정
 - (개선)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등을 조사하여 제시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를 활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관·교강사·학습자 세부 조사
 - 기관 자율적 응답방식을 전수조사(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표본조사(일반평생교육시설, 복지시설 등)로 변경하여 통계 신뢰도 강화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 정착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확대 유도
 - ※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누적): (‘19) 7개 → (‘20) 8개 → (‘21) 10개 → (‘22) 11개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기관설치·운영자, 교·강사 등) 양성 프로그램 및 연수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연 1시간 이상)
 - ※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는 연말에 수합 예정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수 현황 〉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	2022	2023(예정)
1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 역량 강화 과정	337	400
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장애인 평생교육 역량 강화 과정	175	200
3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역량 강화 과정	58	200
4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강화 과정	-	150
5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	296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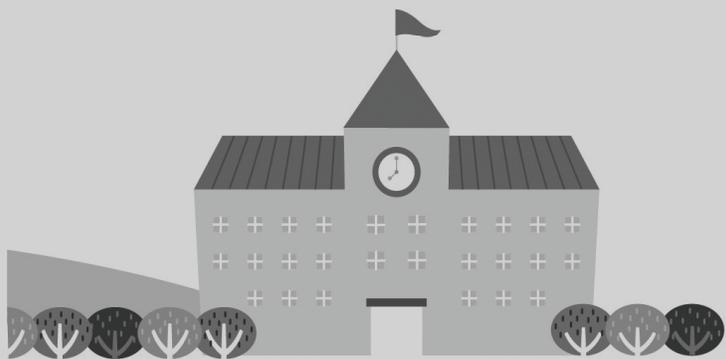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
- ②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연 1시간)
- ③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협조
- ④ 유·초·중·고등학교 및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⑤ 시도교육청과 시도지자체 간 유기적 연계·협조 체제 구축
- ⑥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방역상황 등 관련 현장 점검실시(수시)



2023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V

2023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1) 2023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일시: 2023. 9. 5. ~ 9. 6.(예정)
- 장소: 미정
- 주최: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
- 후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내용: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경진대회 및 e스포츠대회 등
- 참석대상: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 담당자 등 약 1,500명

2) 2023년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 일시: 2023. 9. 20. ~ 9. 21.(예정)
- 장소: 전라남도 여수(예정)
- 주최: 교육부
- 주관: 전라남도교육청
- 대상영역: 감각장애(시각·청각장애)와 지체장애
- 참가대상: 전국 감각·지체장애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학생

3) 2023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 일시: 2023. 5. 16. ~ 5. 19.
- 장소: 울산광역시(울산종합운동장 등)
- 주최: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경기종목: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내조정 등
- 참석대상: 전국 장애학생(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특수교육교원 등

2 기타 행정 사항

1) 2023년 특수교육 실태조사(VI)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학교 관리자, 교사, 종단조사 패널
- 기간: 2023. 6.~8.(예정)
- 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특수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 실태 등 7개 부문 조사
- 방법: 온라인조사(교원), 대면조사(보호자)
- 수행기관: 국립특수교육원

2) 2023년 특수교육통계 조사 실시

- 대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일반학교
- 기간: 2023. 4.
-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기관 및 교원 등 특수교육 관련 주요 현황
- 방법: 나이스 통계 자료 입력 및 점검, 제출 기한 준수
- 제출처: 국립특수교육원

3) 2023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 대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 기간: 2023. 6.
- 내용: 특수교육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서 국회 제출
- 방법: 엑셀 서식 자료 입력 및 점검, 제출 기한 준수
- 제출처: 국립특수교육원

4)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실시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초4~전공과), 보호자, 교원
- 기간: 2023. 5.~10. (예정)
-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관한 사항
- 방법: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대면조사 실시
- 주관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